

진위역 서희스타힐스 더 파크뷰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자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택지유형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07.19.(금)	2024.07.29.(월)	2024.07.30.(화)	2024.07.31.(수)	2024.08.06.(화)	2024.08.10.(토)~ 2024.08.16.(금)	2024.08.19.(월)~ 2024.08.21.(수)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7.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7.19.(금)입니다.(청약자격조건: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3.08.04.) 639세대 공급완료 이후 추가 일반분양세대에 대해 금회 82세대를 공급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82세대는 공급시기에 따른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하여 1회차 공급한 639세대(입주자모집공고 23.08.04.)와 신청자격요건 등이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

-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tarhills-jinwi.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6개월	6개월

※ 전매제한 사항은 향후「주택법」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평택시 주택과 - 30804호(2024.07.1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239-60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29층, 주 17개동, 총 1,659세대 중 일반분양 82세대
[특별공급 세대(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6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6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1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02월 예정(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 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오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
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 방식(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으로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
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 분양주택 상호간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고,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최하층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최하층으로 합니다.(최하층 우선 배정세대는 총 공급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주택형 표시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59.7537A	059.7718B	071.7007B	071.8200C	071.4998D
약식표기	59A	59B	71B	71C	71D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동별 (라인별)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 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회 (10%)	2회 (10%)	3회 (10%)	4회 (10%)	5회 (10%)	6회 (10%)	입주지정일
								계약시	계약후 30일 내	2024.10.31.	2024.11.29.	2024.12.26.	2025.04.30.	2025.10.31.	2026.04.30.	
59A	110,111,115동 1,4호 라인 112,116동 4호 라인	28	1층	1	60,860,000	243,140,000	304,000,000	10,000,000	2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91,200,000
			2층	2	60,860,000	258,140,000	319,000,000	10,000,000	21,900,000	31,900,000	31,900,000	31,900,000	31,900,000	31,900,000	31,900,000	95,700,000
			3층	1	60,860,000	268,140,000	329,000,000	10,000,000	22,900,000	32,900,000	32,900,000	32,900,000	32,900,000	32,900,000	32,900,000	98,700,000
			5~9층	11	60,860,000	274,140,000	335,000,000	10,000,000	2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100,500,000
			10~14층	3	60,860,000	278,140,000	339,000,000	10,000,000	2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101,700,000
			15~21층	1	60,860,000	284,140,000	345,000,000	10,000,000	24,50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103,500,000
			22층 이상	9	60,860,000	294,140,000	355,000,000	10,000,000	2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106,500,000
59B	103동 3호 라인 116동 2호 라인	26	2층	1	60,880,000	263,120,000	324,000,000	10,000,000	2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97,200,000
	3층		1	60,880,000	274,120,000	335,000,000	10,000,000	2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100,500,000	
	110, 111, 115동 2,3호 라인 112, 116동 3호 라인		1층	3	60,880,000	242,120,000	303,000,000	10,000,000	2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90,900,000
			2층	3	60,880,000	257,120,000	318,000,000	10,000,000	2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95,400,000
			5~9층	11	60,880,000	274,120,000	335,000,000	10,000,000	2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100,500,000
			22층 이상	7	60,880,000	294,120,000	355,000,000	10,000,000	2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106,500,000
71B	113동 3호 라인	11	1층	1	73,030,000	293,970,000	367,000,000	10,000,000	2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110,100,000
	2층		1	73,030,000	311,970,000	385,000,000	10,000,000	2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115,500,000	
	4층		1	73,030,000	327,970,000	401,000,000	10,000,000	3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120,300,000	
	108, 113동 2호 라인 109 2,3호 라인		1층	1	73,030,000	286,970,000	360,000,000	10,000,000	2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108,000,000
			2층	2	73,030,000	303,970,000	377,000,000	10,000,000	2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113,100,000
			3층	2	73,030,000	315,970,000	389,000,000	10,000,000	2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116,700,000
			4층	3	73,030,000	319,970,000	393,000,000	10,000,000	2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117,900,000

약식 표기	동별 (라인별)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 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회 (10%)	2회 (10%)	3회 (10%)	4회 (10%)	5회 (10%)	6회 (10%)	입주지정일	
								계약시	계약후 30일 내	2024.10.31.	2024.11.29.	2024.12.26.	2025.04.30.	2025.10.31.	2026.04.30.		
71C	109동 1호 라인	2	2층	1	73,150,000	312,850,000	386,000,000	10,000,000	28,6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115,800,000	
			10~14층	1	73,150,000	336,850,000	410,000,000	10,000,000	3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123,000,000	
71D	108, 113동 4호 라인	15	2층	1	72,830,000	307,170,000	380,000,000	10,000,000	2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114,000,000	
			3층	1	72,830,000	319,170,000	392,000,000	10,000,000	2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117,600,000	
			4층	1	72,830,000	323,170,000	396,000,000	10,000,000	2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118,800,000	
			2층	1	72,830,000	300,170,000	373,000,000	10,000,000	2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111,900,000	
			3층	2	72,830,000	311,170,000	384,000,000	10,000,000	2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115,200,000	
	108, 113동 1호 라인		4층	2	72,830,000	315,170,000	388,000,000	10,000,000	2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116,400,000
			5~9층	1	72,830,000	319,170,000	392,000,000	10,000,000	2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117,600,000
			10~14층	2	72,830,000	323,170,000	396,000,000	10,000,000	2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118,800,000
			22층 이상	4	72,830,000	343,170,000	416,000,000	10,000,000	3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124,800,000

■ 공통 유의사항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주택형별, 층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가전옵션 등 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주택 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또한,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연체료가 발생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으며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 (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59A	59B	71B	71D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 유공자		1	-	-	-	1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	-	1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	1	-	1	
	중소기업 근로자		-	1	-	-	1	
	장애인	인천광역시	-	-	-	-	-	2
		서울특별시	-	-	-	1	1	
		경기도	1	-	-	-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 (50%)		1	1	1	1	4	6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국 거주자 (50%)		1	1	0	0	2	
신혼부부 특별공급			4	4	1	2	11	
생애최초 특별공급			2	2	-	1	5	
합 계			10	10	3	5	2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유의사항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7.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됩니다. 다만 2024.07.01.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구분	내용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table>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경기도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평택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경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 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하며, 평택시 및 경기도 물량의 낙점자가 기타지역물량에서 재경쟁 시 지역우선공급 기준은 미적용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50%) → 기타지역 거주자(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지역 거주자)(50%)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비고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11세대
-----	--------------------------------	-----------------------------------

구분	내용
----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table><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1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 (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tr><td>3단계</td><td>우선공급 (35%)</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tr><td>4단계</td><td>일반공급 (15%)</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tr><td>5단계</td><td>추첨공급 (3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table><tr><th>순위</th><th>내용</th></tr><tr><td>1순위</td><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tr><tr><td>2순위</td><td>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td></tr></table>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 기타지역 거주자(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지역 거주자)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3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3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비고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7.19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11,139,705원~ 15,595,586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405,412원~ 11,207,214원	9,898,161원~ 13,197,547원	10,530,086원~ 14,040,114원	11,475,939원~ 15,301,251원	12,421,793원~ 16,562,389원	13,367,64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5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7.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 기타지역 거주자(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지역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7.19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인 가구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평택시 및 기타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 기타지역(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지역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7.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호)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③ 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th>비율</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1단계</td><td>추첨제 물량의 75%</td><td>무주택세대구성원</td></tr> <tr> <td>2단계</td><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tr> <tr> <td>3단계</td><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tr> </tbody> </table> ■ ④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신청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2024.07.29.(월) (청약Home : 09:00~17:30) (건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사업주체 건본주택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315-49번지
일반공급	1순위	2024.07.30.(화)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4.07.31.(수) 09:00~17:30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건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배우자 포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일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8.06.(화) ~ 2024.08.15(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4.08.06.(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 일시 : 2024.08.06.(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4.08.19.(월) ~ 2024.08.21.(수) 3일간 (10:00 ~ 16:00) • 장소 : 진위역 서히스타힐스 더 파크뷰 견본주택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315-49번지)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7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구분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구분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신청자가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

■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구분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서류제출 장소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2024.08.10.(토) ~ 2024.08.16.(금)	· 진위역 서희스타힐스 더 파크뷰 견본주택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315-49번지)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유의사항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이 불가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신청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는 청약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자격검증 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및 사업관계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당첨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기간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공급계약 체결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않을 시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에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청약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미소명 시에는 부적격 처리됨. 또한, 서류 미제출로 인해 자격검증이 불가할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자격검증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인으로 봄)

■ 당첨자(예비입주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안내

구 분	서류유형		서류	발급 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	○		특별공급 신청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주택공급 신청(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계약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	본인	· 국내 거주기간 확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 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10년이상 군복무기간 명시) ·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국방부에서 통보한 명단으로 대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과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확인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 19세 이상, 세대주인 미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모두 제출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 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 19세 이상, 세대주인 미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 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참조]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해당자	·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근로자 및 자영업자 포함) · 견본주택 비치

		○	부동산 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보유 확인 제출 서류 참고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자녀를 미성년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혼인신고일 전 출산한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생애최초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확인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 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닌 분이 동일등본상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 로 인정 받고자 할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 19세 이상, 세대주인 미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모두 제출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소득 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 19세 이상, 세대주인 미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해당자	·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근로자 및 자영업자 포함) · 건본주택 비치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보유 확인 제출 서류 참고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가구원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건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일반공급		○	가점산정기준표	본인	· 가점제 당첨자인 경우[건본주택 비치] 가점산정기준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 대분리된 경우
		○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이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이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관공서에서 발급 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 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전세 피해자 제출서류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임대차계약서, 낙찰 증명서류(매각허가결정경매, 매각결정통지서공매 등) ·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택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가능한 여타의 자료 *(예시) 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 등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사가격 증명원 등)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 공급신청 위임용, 본인 발급용만 인정

추가서류	○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서류접수 기간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해당자격		소득세 입증 제출 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이 있는 년도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 전, 후의 급여신청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본인의 근로(연봉)계약서를 제출받아 월 평균 소득을 추정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①, ② 해당 직장
	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①,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공고일 이전 가입)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②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및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재무제표 ③ 사업자등록증	① 세무서/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③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세무서 ②, ③ 해당직장
기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금년도 신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증명서	① 세무서/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② 사실증명(소득세 신고사실이 없음)	① 견본주택 ② 세무서

--	--	--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청약신청자 본인)

구 분	해당자격	소득세 입증 제출 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건강보험공단 ②해당직장/세무서 ③해당직장/세무서
	자영업자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 ③ 원천징수영수증 ※ 과거 1년 내 근로(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① 소득금액증명 ②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한함)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추가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①,②세무서 ③해당직장 ④해당직장 / 세무서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당년도 모두)하여야 합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경우 직인날인 불필요)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제 당첨자 자산보유 확인 제출 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소유 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구)	①,② 등기소(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포함) ③ 행정복지센터, 위택스
	추가 (해당자)	④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⑤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⑥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부동산 소유 현황'조회결과(세대원별 각각 발급)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구)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② 행정복지센터, 위택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기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

구분	계약체결 기간	장소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2024.08.19.(월) ~ 2024.08.21.(수) (3일간 10:00 ~ 16:00)	- 진위역 서희스타힐스 더 파크뷰 견본주택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315-49번지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계약시 구비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대리인도 본인계약 서류 일체 포함)	○		자격검증서류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당첨자 서류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추가 개별통지서류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		입금증	- 계약금 입금 영수증 - 견본주택에서는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1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		인감증명서	- 용도 : 아파트계약용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본인 계약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 절대 불가)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	기타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	신분증 (당첨자, 대리인)	- 청약자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1년 12월 21일 이후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	위임장	위임장(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장소에 비치
		○	인감증명서	- 용도 : 아파트계약위임용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청약자 본인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약금과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 관리계좌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광주은행	1107-021-564663	우리자산신탁(주)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101동 101호 당첨자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상기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 오류, 착오납입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청약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계약 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 및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관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 (1) 당첨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2) 특별공급 당첨자 및 그 세대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는 주택 전시장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 및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시 이를 당사 건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정당 당첨 건은 무효 처리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 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대출 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또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람)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공급대금의 60% 이내에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중도금대출을 알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6회차 중 1~6회차는 중도금 대출금으로 납부되고, 계약금 및 잔금은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검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 이전에 대신 납부했던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입주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자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대출취급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에 따릅니다.

■ 연체 안내

- 잔금을 납부기간 이후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의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적용됨

10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선택 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타입)	공급금액	계약시(10%)	중도금(20%)	잔금(70%)
		계약시	2024.10.31	입주지정일
59A	13,700,000	1,370,000	2,740,000	9,590,000
59B	13,200,000	1,320,000	2,640,000	9,240,000
71B	16,200,000	1,620,000	3,240,000	11,340,000
71C	15,900,000	1,590,000	3,180,000	11,130,000
71D	15,700,000	1,570,000	3,140,000	10,99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광주은행	1107-021-564663	우리자산신탁(주)

-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납부 영수증으로 간주되며,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점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대금을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501호 홍길동 : 1011501홍길동 / 106동 501호 홍길동 : 1060501홍길동)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건본주택에 설치하였음.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함.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계약 이후에는 계약 해제가 불가하며,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계약이 불가함.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홍보물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함(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주기적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또는 압체선정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본형 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위 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발코니 확장형을 중심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형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가 시공 되지 않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새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외벽은 시공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제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선흠통, 배수관이 일부 노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형의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새시 설치 기준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실 시공시 공동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확장 공사를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절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준공이후 발코니 구조변경을 할 경우 개별세대로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득하여야 하고 사전허가 없이 불법구조 변경하여 확장하는 행위는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비 확장 시 추가선택품목은 선택할 수 없으며, 기본형으로 설치됨.
 - 비 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발코니 비 확장 시 창호 및 각종 가구류(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등)는 확장 시 제공 품목 등 구성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분양홈페이지 및 분양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모든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에만 적용 가능함.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수납장의 길이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인접 세대가 발코니 미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 확장 형태에 따라 드레스룸 형태, 선반 개수, 사이즈 등이 상이함.
 -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창호는 향후 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동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하며 계약자의 개별시공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가능함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허용오차 내)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4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단위: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 택 안		설치 장소	옵션 금액	비 고
	선택	실내기 설치대수			
59A/B	선택 1	2대	거실 + 침실1	3,500,000	LG전자
	선택 2	3대	거실 + 침실1,2	4,700,000	
	선택 3	4대	거실 + 침실 1, 2, 3	6,000,000	
71B/C/D	선택 1	2대	거실 + 침실1	3,600,000	

	선택 2	3대	거실 + 침실1,2	4,800,000	
	선택 3	4대	거실 + 침실 1, 2, 3	6,100,000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을 선택하지 않을 시에는 거실과 침실1(안방)에 한하여 냉매배관이 기본으로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세대의 경우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드레인 포함) 및 관련시설은 설치하지 않으며 미설치에 따른 감액은 상기금액에 포함됨.
- 선택형에 따라 실이 통합되는 경우에도 에어컨 설치개소는 변동 없으며, 설치 장소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 옵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현관 중문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모델명	규격	설치 위치	옵션 금액	비고
3연동 아델리오	8T브론즈 강화 투명유리, 아이보리(59),블랙(71)	현관	1,500,000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제품 선택 시 현관 가구장이 변경되며, 상기 금액은 수정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하부 레일은 노출시공되며, 천장 물딩이 제외 될 수 있음.

■ 바닥재 변경

(단위: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모델명	설치 위치	옵션 금액	비고
59A(침실분리형)	포세린 타일	외산타일	거실, 주방, 팬트리 바닥	4,400,000	
59A(거실통합형)	포세린 타일	외산타일	거실, 주방, 팬트리 바닥	5,500,000	
59B(침실분리형)	포세린 타일	외산타일	거실, 주방, 팬트리 바닥	4,500,000	
59B(거실통합형)	포세린 타일	외산타일	거실, 주방, 팬트리 바닥	5,700,000	
71B(침실분리형)	포세린 타일	외산타일	거실, 주방 바닥	4,850,000	
71B(거실통합형)	포세린 타일	외산타일	거실, 주방 바닥	6,100,000	
71B(침실분리형)	포세린 타일	외산타일	거실, 주방, 보조주방, 팬트리 바닥	5,650,000	프리미엄 주방 선택 시
71B(거실통합형)	포세린 타일	외산타일	거실, 주방, 보조주방, 팬트리 바닥	6,950,000	프리미엄 주방 선택 시
71C	포세린 타일	외산타일	거실, 주방 바닥	4,450,000	
71D	포세린 타일	외산타일	거실, 주방, 팬트리 바닥	5,050,000	

- 포세린 자재 특성상 제작시점에 따라 입자와 색상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타일 나누기는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음.
- 타일 선택 시 단위세대 천장고는 CH:2,285mm로 시공되며, 본 공사 여건에 따라 천장고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옵션 금액은 강마루 미설치에 따른 감소비용과 포세린 설치 비용이 가감된 금액임.
- 포세린 타일 미선택 시 기본적으로 강마루가 시공됨.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주방가전제품

(단위: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설치유형	모델명	옵션 금액	비고
			본체		
59A/B	오브제4도어	냉장고(냉동고포함)	BC4S1AA1	4,000,000	LG전자
71B/C/D	오브제1도어	냉장고	BC1L2AA	5,700,000	
		냉동고	BC1F2AA		
		김치냉장고	BC1K2AA		
공통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	DUB22SB2	1,300,000	LG전자
공통	전기레인지	인덕션3구 or 하이브리드3구 택1	KR-S4800 / KR-SH4600	660,000	웰치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빌트인 가전제품 옵션 금액은 가구장 수정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가구장 변경에 따른 가감금액 없음.)
- 오브제4도어 또는 오브제1도어 미선택 시 냉장고장(여닫이 상부장만)이 기본적으로 설치되며, 일반 냉장고 설치 시 냉장고장보다 돌출될 수 있음.
- 상기 빌트인 가전 품목들은 제품 특성 상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사용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가전류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산정 기준 및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방가전제품 옵션(유상옵션)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냉장고 패널은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상옵션 행사시에 안내됨.
- 전기레인지 선택 시 전기레인지 설치에 따른 가스쿡탑,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미설치됨.

■ 마감재 변경

(단위: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 목	옵 션 안	옵션 금액	비고
59A	프리미엄 거실1안 (침실분리형)	거실 후면벽, 복도 웰컴월 디자인시트판넬	3,170,000	
		거실직부등 특화, 거실우물천장 간접조명	730,000	
		복도 간접조명 및 픽처레일	380,000	
	프리미엄 거실2안 (거실통합형)	거실 후면벽 디자인시트판넬	2,090,000	
		거실직부등 특화, 거실우물천장 간접조명(연장)	840,000	
	프리미엄 주방	주방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	3,190,000	엔지니어드스톤 : 롯데케미컬 / 라인
		주방조명 특화, 수전 및 액세서리 특화, 팝업콘센트, 사각싱크볼	1,870,000	
		오브제4도어, 식기세척기, 인덕션3구	5,960,000	전기레인지 : 웰치
	프리미엄 드레스룸	고급형 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 + 벽판넬형선반 + 상부LED조명바 + 화장대)	3,700,000	

주택형	품 목	옵 션 안	옵션 금액	비고
59B	프리미엄 거실1안 (침실분리형)	거실 후면벽, 복도 웰컴월 디자인시트판넬	3,290,000	
		거실직부등 특화, 거실우물천장 간접조명	730,000	
		복도 간접조명 및 픽처레일	410,000	
	프리미엄 거실2안 (거실통합형)	거실 후면벽 디자인시트판넬	2,090,000	
		거실직부등 특화, 거실우물천장 간접조명(연장)	840,000	
	프리미엄 주방	주방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	3,330,000	엔지니어드스톤 : 롯데케미컬 / 라인
		주방조명 특화, 수전 및 액세서리 특화, 팝업콘센트, 사각싱크볼	1,870,000	
		오브제4도어, 식기세척기, 인덕션3구	5,960,000	전기레인지 : 웰치
	프리미엄 드레스룸	고급형 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 + 벽판넬형선반 + 상부LED조명바 + 스페이스월)	3,600,000	

주택형	품 목	옵 션 안	옵션 금액	비고
71B	프리미엄 거실1안 (침실분리형)	거실 후면벽, 복도 웰컴월 디자인시트판넬	3,700,000	
		거실직부등 특화, 거실우물천장 간접조명	940,000	
		복도 간접조명 및 픽처레일	410,000	
	프리미엄 거실2안 (거실통합형)	거실 후면벽 디자인시트판넬	2,500,000	
		거실직부등 특화, 거실우물천장 간접조명(연장)	880,000	
	프리미엄 주방	상부 전동 플랩장(유럽산 하드웨어 및 독립형 주방후드 포함)	13,920,000	
		주방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	3,250,000	엔지니어드스톤 : 롯데케미컬 / 시에라베드락
		주방조명 특화, 수전 및 액세서리 특화, 팝업콘센트, 사각싱크볼	1,870,000	
		오브제(냉장,냉동,김치), 식기세척기, 인덕션3구	7,660,000	전기레인지 : 웰치
		알파룸 특화(보조주방 + 팬트리)	2,750,000	
	프리미엄 드레스룸	고급형 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 + 벽판넬형선반 + 상부LED조명바 + 스페이스월)	3,600,000	

주택형	품 목	옵 션 안	옵션 금액	비고
71C	프리미엄 거실	거실 후면벽 디자인시트판넬	2,160,000	
		거실직부등 특화, 거실우물천장 간접조명	940,000	
	프리미엄 주방	상부 전동 플랩장(유럽산 하드웨어 및 독립형 주방후드 포함)	13,920,000	
		주방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	2,900,000	엔지니어드스톤 : 롯데케미컬 / 시에라베드락
		주방조명 특화, 수전 및 액세서리 특화, 팝업콘센트, 사각싱크볼	1,870,000	
		오브제(냉장,냉동,김치), 식기세척기, 인덕션3구	7,660,000	전기레인지 : 웰치
	프리미엄 드레스룸	고급형 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 + 벽판넬형선반 + 상부LED조명바 + 화장대)	4,200,000	

주택형	품 목	옵 션 안	옵션 금액	비고
71D	프리미엄 거실	거실 후면벽, 복도 웰컴월 디자인시트판넬	3,570,000	
		거실직부등 특화, 거실우물천장 간접조명	940,000	
		복도 간접조명 및 픽처레일	480,000	
	프리미엄 주방	상부 전동 플랩장(유럽산 하드웨어 및 독립형 주방후드 포함)	13,920,000	
		주방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	2,970,000	엔지니어드스톤 : 롯데케미컬 / 시에라베드락
		주방조명 특화, 수전 및 액세서리 특화, 팝업콘센트, 사각싱크볼	1,870,000	
		오브제(냉장,냉동,김치), 식기세척기, 인덕션3구	7,660,000	전기레인지 : 웰치
	프리미엄 드레스룸	고급형 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 + 벽판넬형선반 + 상부LED조명바)	4,700,000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마감재 변경 옵션금액은 해당 옵션 선택 시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엔지니어드스톤 자재 특성상 접합부에 이음매가 있으며, 본 공사 시 이음매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제작 시점에 따라 입자와 색상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엔지니어드스톤 시공 시 코너부분은 실리콘으로 마감됨.
- 상기 빌트인 가전 품목들은 제품 특성 상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사용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프리미엄 거실 미선택 시 디자인시트판넬 시공 부위는 벽지로 시공됨.
- 프리미엄 주방 미선택 시 기본적으로 주방벽 도기질타일(600X300mm) 및 주방상판 인조대리석(MMA)이 설치되며, 팝업콘센트는 미설치되며, 일반싱크볼이 설치됨.

- 프리미엄 드레스룸 미선택 시 벽판넬 시공 부위는 벽지로 시공됨.
- 프리미엄 주방 선택 시 전기레인지 설치에 따른 가스쿡탑,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미설치됨.
- 옵션 선택시 전기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통합수구)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가전류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상정 기준 및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 옵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엔지니어드스톤 (프리미엄 주방 미선택 시)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모델명	설치 위치	옵션 금액	비고
59A	엔지니어드스톤	롯데케미컬 / 라인	주방상판 및 벽마감	2,440,000	
59B	엔지니어드스톤	롯데케미컬 / 라인	주방상판 및 벽마감	2,560,000	
71B	엔지니어드스톤	롯데케미컬 / 시에라베드락	주방상판 및 벽마감	2,490,000	
71C	엔지니어드스톤	롯데케미컬 / 시에라베드락	주방상판 및 벽마감	2,420,000	
71D	엔지니어드스톤	롯데케미컬 / 시에라베드락	주방상판 및 벽마감	2,410,000	

- 엔지니어드스톤 자재 특성상 접합부에 이음매가 있으며, 본 공사 시 이음매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 엔지니어드스톤 자재 특성상 제작 시점에 따라 입자와 색상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엔지니어드스톤 시공 시 코너부분은 실리콘으로 마감됨.
- 상기 옵션 금액은 인조대리석 및 주방타일 미설치에 따른 감소비용과 엔지니어드스톤 설치 비용이 가감된 금액임.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엔지니어드스톤 미선택 시 기본적으로 주방벽 도기질타일(600X300mm) 및 주방상판 인조대리석(MMA)이 설치됨.
- 엔지니어드스톤만 선택 시 팝업콘센트는 미설치되며, 일반싱크볼이 설치됨.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시스템 에어컨	광주은행	1107-021-601859	우리자산신탁(주)
현관 중문			
바닥재 변경			
주방가전제품			
마감재 변경			
엔지니어드스톤			

■ 별도계약 품목관련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별도 계약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음.
- 추가 별도계약 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후 관할 시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됨.
- 발코니 확장부위 표기는 사업승인도서 기준이며, 별지 '계약자 선택 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 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별도계약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음. (2005.12.2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별도계약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별도계약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별도계약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별도계약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임)
- 별도계약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기본제공품목

구분	기본제공품목
바닥재	강마루(걸레받이포함), 바닥타일(현관, 욕실, 발코니, 실외기실), 천연대리석(현관 디딤판/철판), 인조대리석(재료분리대,도어하부썰)
벽, 천장	벽지/천장지, 도장(발코니, 실외기실 벽/천장), 거실 아트월타일, 주방 벽타일, 천장몰딩, 발코니1 전동빨래건조대, 실별 스위치 및 콘센트, 개별온도조절기(거실,침실), 에어컨 매립형 냉매배관(거실, 침실1)
조명기구	직부등 및 매입등 조명기구 일체
욕실	타일(벽, 바닥), ABS천장재, 인조대리석(비누턱상판, 재료분리대, 도어하부썰), 바닥배수구, 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욕실장, 샤워부스, 욕조/에이프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욕실2 비데
주방가구 및 주방마감재	상.하부장(싱크수전, 싱크볼, 액세서리류 포함), 주방상판(인조대리석), 벽타일, 가스쿠팅, 렌지후드, 전기오븐렌지, 음식물탈수기, 절수풋밸브
창호	실별 문틀/문짝, 도어락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PVC창호, 실외기그릴창
일반가구 및 기타사항	현관 신발장, 팬트리 가구도어(해당타입), 시스템선반(해당타입), 발코니 수전류, 발코니 바닥배수구(오.우수 선홍통 포함), 홈네트워크시스템(현관 디지털도어록/도어 카메라폰/일괄소등스위치, 거실 월패드/조명네트워크스위치, 주방TV, 욕실2 스피커폰), 발코니난간대, 자연환기시스템(창호부착형)

- 마감재(목록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품목은 주택법 제54조 제1항2호에 따라 기본품목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었으며, 플러스 옵션(유상 옵션) 선택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품목입니다.

11 단지 여건 및 설계관련 유의사항 등

■ 일반 공통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2007.07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의무화 조치(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5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펌프실/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사 진행 및 설계의 변경 등으로 계약면적에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 결과 또는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지구의 대지면적은 확정 측량 시 증감될 수 있으며, 대지지분의 변동에 대해서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1% 이내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동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당 아파트의 도면은 건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단위세대 Type일지라도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공급면적과 계약면적이 상이하니,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동일한 TYPE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간 조건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 분양 홍보에 사용된 공급 안내문, 단지 및 세대 모형,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평면도(치수, 구획선), 면적 및 도면내용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주변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등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 아파트의 마감사항, 부대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샘플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항 및 부대편의 시설, 조경 식재, 시설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시설물 명칭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전기&통신시설물(공용조명포함), 놀이터, 휴게공간,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01.23)」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하였습니다.
-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 각종 환기구(D/A 등)는 환기장치 작동시 기류 및 장비소음 및 배기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시설물 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 관련 유의사항

- 건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조합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의 마감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에는 인허가청에 제출된 마감재리스트에 따라 시공됨.
- 건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TV, 세탁기, 건조기 등), 기타 전사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으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건본주택 내 안방 발코니는 단열 및 바닥난방이 제공되지 않는 공간이며, 안방과 발코니 사이에는 본공사시 분합문이 설치됨.
- 건본주택 내 주방 발코니는 단열 및 바닥난방이 제공되지 않는 공간이며, 주방과 발코니 사이에는 본공사시 터닝도어가 설치됨.
- 건본주택 내 침실 및 욕실등 각 실에는 본공사시 여단이 문이 설치됨.
- 건본주택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무상옵션 품목 뿐 아니라 추가 선택품목(유상) 품목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전 마감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카탈로그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됨.
- 건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추가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시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추가선택 품목, 건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건본주택에서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식재, 경관연출 등)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차·보도 포장, 식재, 시설물의 마감 재질, 디자인, 선형, 위치, 규모, 색채, 거리, 폭을 포함하여 주변환경과 부지 내 계획고변경에 따른 고저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 과정 상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대지 주변환경,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건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및 가전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시설물, 환기구(DA),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은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구, 조명기구, 전기분전함, 통신 단자함의 설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본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등의 제품 사양은 동등의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 내에 시공(전시)되어 있지 않은 평면에 대해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분양 안내책자 등을 통해 계약 전 세대내부, 가구배치 및 크기, 가전 크기, 실면적, 구조 및 마감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 시 건본주택 내에 시공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의 해지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건본주택 내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 건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추가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설치 및 시공내용,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건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건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다로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건축허가 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모형 및 조감도 등에 표현된 외부마감재료(바닥, 벽 등) 및 아파트 외벽의 줄눈 형태, 칼라는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다용도실(주방발코니)의 천장 높이 및 바닥 단 깊이 등은 본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현관방화문은 성능에 따라 형태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가구 디테일 및 이음매의 위치, 도어 나누기 등은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천장물딩의 형태는 본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사용된 도배지는 품질 및 하자방지를 위하여 제조사가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건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연출용 전시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의 배선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건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됨(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 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분양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 홍보용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문,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홍보물[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 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각종 인쇄물 및 모형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의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평면도, 조감도, 배치도, 이미지 컷,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조감도 및 배치도, 인근의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 및 모형에 표현된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공간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모형에 표현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근린 공원, 완충녹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정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제작된 사전 홍보자료는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 전 건본주택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해야 함.

■ 설계 관련 유의 사항

- 계약 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 (공공공지, 완충녹지, 근린공원, 오산세종병원, 한일아파트, 단지 내외 도로 및 보행로, 지상철(철도), 갈곶초등학교, 버스정거장, 산업단지, 공장, 물류센터, 주유소, 혐오시설유무, 도로(경기대로, 엘지로, 신설계획도로), 하천, 구거, 건물, 소음, 진동, 분진, 조망, 일조, 진입로, 침수피해, 악취,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입주자는 기반시설의 준공(기반시설 준공 이후 대지권 등기 가능) 이후 입주가 가능하고, 기반시설조성공사 등 각종 여건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주택법 시행규칙 13조 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3.08.04.) 당시 국공유지(3,713㎡) 소유권 확보 예정 사항은 2023년 9월 21일자로 소유권 확보하였음.
- 광역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단지 외 설치되는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공공공지, 완충녹지, 단독주택용지, 근린공원, 주차장, 버스정거장 등의 개설 등은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및 용도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또한 개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빛, 소음, 분진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부지 외 인근의 신설 . 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사업계획승인 당시 계획된 소음치가 주변 지역여건의 변화로 건물 완공 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차량증가로 인한 입주 소음에 대하여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 카다로그, 홍보물, CG, 단지모형 등에 표시한 단지 외부의 녹지 및 공원, 보행자 도로, 주차장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임.
- 본 공동주택(아파트) 입주 예정인 초등학교생은 갈곶초등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나,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입주 전년도에 확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동주택(아파트) 입주 예정인 중학생은 진위중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나, 중학군(구) 지정은 매해 전년도에 확정변동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정 일정 및 방법 등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동주택(아파트) 입주 예정인 고등학생은 평택 내 기존 고등학교(21교)와 설립이 확정되어 추진중인 2교로 배치될 예정임
- 학생 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인근학교 배치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청인 평택교육지원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거나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건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지 경계명시측량 및 확정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단지배치, 단지내 도로 선형, 조정(수목,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 별 위치,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홍보물, 단지모형 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공급면적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시 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음.
- 입면차별화 및 기능개선 등에 따른 사업승인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 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입면특화 등을 위한 외부몰딩, 커튼월, 석재마감 등을 설치할 경우 일부 세대는 높은 턱이 생길 수 있음.)
- 단지명칭 및 동번호,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색채심의,경관심의 등을 포함)결과 및 법규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조경, 어린이놀이터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선형이나 포장 및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수량,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입주 후 불법구조물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단지 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상에서 각동으로 진입하는 주동 출입구 위치는, 부대시설 및 필로티 유무, 주동 형태 및 대지의 단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계약시 홍보자료를 통하여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PIT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구조 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접근 거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위세대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 설비 시설물의 위치 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 질 수 있으며, 배치도(CG, 모형 등)의 바닥 마감패턴, 칼라 등은 추후 디자인 의도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 및 홍보자료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주민공동시설,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속도·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조합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시 선희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선희통 배수관이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음.
- 전후면 발코니 창호의 형태, 재질, 크기 및 콘크리트 난간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설치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주,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자전거 보관소,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와 빛,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주차장 급배기시설 (D/A)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전거보관소,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커뮤니티광장, 단지내 보행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의 침해와 소음, 진동, 분진, 냄새(악취), 해충 등의 환경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상세한 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 및 홍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재료 고유의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음.
- 현관디딤판, 화장대 상판, 욕실 전대 등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설치 부위의 비노출면 (바닥, 벽, 천장 등)은 별도마감 없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에 의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 등은 본 시공시 디자인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2)**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6.0m ~ 7.0m	지하 1층: 2.7m 이상 그 외 층 : 2.3m 이상	지하 1층: 2.7m 이상

- 일부 세대의 경우 현관 전면에 승강기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계약 전에 도면 및 홍보자료등을 확인하기 바람, 현관 전면에 계단실은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경계부는 단지 외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바닥포장, 지상, 지하 동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위세대 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은 안전성에 따라 본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창호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외 레벨차에 의한 구간은 세대별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에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욕실 천장에는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 될 수 있음.
- 주택형 71C는 세대분리형으로 한 호실에 두 세대가 살 수 있는 세대 구분형으로 호실당 보일리는 1대만 설치됨
- 주택형 71C는 세대분리형으로 한 호실에 두 세대가 살 수 있는 세대 구분형이나, 현행법상 1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체결할 경우 전기료, 난방비 등의 관리비는 통합 고지되며, 벽간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주택형 71C는 세대분리형으로 침실 2와 침실 3 사이에 세대 구분을 위해 벽체가 시공되며, 임의로 변경은 불가함.
- 도시가스공급자에 의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정압실이 단지 내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저층부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내 보행로(산책로 등) 및 외부계단이 단지 내에 설치되며, 소음, 조망권, 사생활권 침해 및 기타 외부인 통행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파우더룸 하부, 신발장 내부 또는 배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구내부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분전함, 세대통신함은 침실, 주방, 알파룸, 팬트리 등의 벽체에 노출하여 시공되며, 위치 및 형태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한.
- 현관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불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필로티층에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세대는 바닥난방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건물과 건물사이의 보행자 통로, 비상차량 동선, 주변 도로 및 광장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로 인접 및 주변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에 인접한 부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휴게시설, 옥외시설물, 광장, 주차장진출입구, 차량 차단기, 주출입구 (경비실), 외부 승강기, 외부계단 등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차량불빛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승강기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고, 각동 저층세대는 근린생활 시설과 부대복리시설에 의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승강기, 각종 기계, 공조, 환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생활환경 (관상용식물, 사위,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자용 구조물, 태양광패널,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음.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태양광 패널의 규모, 위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보안 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름.
- 경관조명, 측면 로고 등이 설치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함.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경로당, 근로자휴게실, 어린이집,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맘스테이션, 관리사무실, 경비실 등 부대 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되며, 마감재 및 제품품목, 진출입 동선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단지내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면적증감 등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 재료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가전제품, 부동산중개 등)는 본 사업과 무관하므로 특히 계약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동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화재용 시각경보장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 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창호 일부에 설치되는 자연형 환기 방식으로 시공됨. (별도의 기계식 환기 설비 미시공)
- 세대내 일부 도어가 손잡이로 인해 90도 개방이 어려울 수 있음.
- 일부 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 설계로 비확장시 통행이 어려운 폭의 발코니 구간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각동 인근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전거 보관소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일부동 저층세대는 일조확보율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는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외관 및 옥상에 경관조명이 설치될 경우 야간에 빛에 의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모든 세대의 발코니1 일부(실외기실 내)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로 대피공간을 대신하며, 이는 피난의 용도로 구성된 공간이므로 물건의 적치 등을 할 수 없고,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로 상하부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하향식 피난구 적용 시, 1층 세대 및 필로티 상부 세대는 설치 제외)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돌봄센터,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차량, 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 사업승인 도서 및 홍보자료에 설치되는 위치 및 개소가 일부변경 될 수 있음.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음. 또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확장세대와 비확장 세대가 좌 . 우 . 상 . 하에 인접하는 등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인접한 세대의 발코니 미확장으로 인한 단열재 시공으로 벽체가 일부 돌출 될 수 있음.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등이 상이하오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부위는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함.
- 주동 및 부대시설 외벽 마감은 디자인 개선,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재료, 컬러, 형태, 재질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함.
- 동일 유형의 단위세대 중 측세대와 중간세대는 주동의 평면 조합에 따라, '발코니의 길이' 혹은 '창호의 위치'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는 준공시 소음측정결과에 따라 일부구간 방음벽, 저소음 포장시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의 일조 및 조망, 소음 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여야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필로티, 보행자, 비상차량 동선 등으로부터 소음 및 시각적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지하에 제연철클루 및 통신실(점검실)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동에 인접하여 탐라이트 설치에 의한 시각적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동에 인접하여 입주민 보행자 동선을 위한 계단이 설치되어,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음.
- 동에 인접하여 DA 설치에 의한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와 시각적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옥상에 태양광패널, 옥상구조물, 야간경관 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지하에 빗물저류조가 계획되어 있어 인근세대는 소음, 냄새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거 공용 부분인 전실 및 홀 등은 입주자 전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주동 저층부 및 필로티 내에 제연 설비를 위한 DA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 인근 및 필로티 내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될 수 있으며, 빛,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수 있음.
- 단지내 돌봄센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제3항 제3호」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시설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제5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될 예정임.
- 지하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2.3m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5호에 적합하게 설치됨. (향후 출입구 높이와 관련하여서는 시공상 높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내 트렌치가 시공될 경우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트렌치가 배면, 측면에 시공될 시에는 주차라인 마킹 시공 제외됨.
- 해당 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며, 지하주차장은 단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도열 주차 배분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고(동별 주차대수, 동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 일부 동의 경우 주차대수가 충분하지 않아 인접동 지하 주차장 이용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이용 동선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 바람.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한 옥외 안테나가 102동,104동,106동,109동,111동,115동 옥상에 설치 되며 전자파, 조망 등의 환경영향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한 중계장치가 102동,104동,106동,109동,111동,115동 옥상 및 102동,105동,109동,111동,117동 지하1층 통신실에 설치 되어 전자파 등의 환경영향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단지 부출입구는 지하1층 주차장으로 진입 할 수 있으며, 외부계단, 승강기를 통해, 지상으로 이동 가능함.
- 사용검사 이후, 단지 내 조경시설물, 경관조명, 단지홍보용 조명, 공용조명, 보안등, 수목관리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당사 주택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홍보자료 및 사업승인도면(설계변경사항 및 신고사항 포함)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에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업승인도면(설계변경사항 및 신고사항 포함)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홈페이지, 견본주택, 카다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 컷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함.
- 입주자모집공고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함.
- 동별 설계상 주요 유의사항

구 분	공 지 내 용
101동	• 지하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동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해충,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측에 공공공지, 보행자 주출입구, 보행자용 외부계단, 외부 승강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서측에 지하주차장 출입용 외부승강기와 외부계단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측, 북서측에 완충녹지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동측에 커뮤니티 가로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인접하여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진동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 서측에 35m 도로가 있어 빛, 소음, 분진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 남측에 20m 도로가 있어 빛, 소음, 분진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주변에 방음벽, 저소음 포장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커튼월(일부동)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2동	• 지하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해충,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측에 커뮤니티 가로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지하에 인접하여 근린생활시설용 제연헬륨, 펌프실, 저수조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진동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남측에 20m 도로 및 버스정거장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동측에 커뮤니티 광장, 맘스테이션 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해충,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3동	• 지하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측에 커뮤니티 광장, 맘스테이션 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해충,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동측, 북서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해충,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에 인접하여 지하주차장 출입구(단지 주출입구) 및 문주, 보행광장, 보행자용 외부계단, 지상 승강기, 경비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지하에 인접하여, 근린생활시설 제연헬륨, 펌프실 및 저수조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진동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지하에 인접하여, 맘스테이션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진동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남측에 20m 도로 및 버스정거장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측에 커뮤니티 가로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4동	• 지하층에 근린생활시설, 방재실, MDF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측에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해충,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서측에 커뮤니티 광장, 맘스테이션 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해충,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에 인접하여 지하주차장 출입구(단지 주출입구) 및 문주, 보행광장, 보행자용 외부계단, 지상 승강기, 경비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측에 커뮤니티 가로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지하에 인접하여, 근린생활시설용 발전기실, 전기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진동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지하에 인접하여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진동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남측에 20m 도로 및 버스정거장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5동	• 지하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진동, 조망, 분진, 배기,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서측에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해충, 악취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측에 커뮤니티 가로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지하에 인접하여, 근린생활시설용 발전기실, 전기실, 제연헬륨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진동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남측에 20m 도로 및 버스정거장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북동측에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동측에 완충녹지, 커뮤니티 가로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6동	• 지하층에 작은도서관, 돌봄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측에 완충녹지, 커뮤니티 가로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지하에 인접하여, 발전기실, 전기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진동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지하에 인접하여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용 제연헬륨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진동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남측에 20m 도로 및 버스정거장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북측에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7동	• 남측에 완충녹지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남측에 20m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북측 및 동측에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동측에 한일아파트 및 초등학교(갈곶)가 위치하고 있어 의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8동	• 지하층에 인접하여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진동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동측, 남동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측에 완충녹지, 버스정거장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분진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측에 보행자 주출입구, 보행자용 외부계단, 외부 승강기, 지하주차장 출입용 외부승강기와 외부계단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측에 휴게공간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지하에 인접하여 빗물저류조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 서측에 35m 도로가 있어 빛, 소음, 분진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주변에 방음벽, 저소음 포장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커튼월(일부동)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9동	• 북측, 남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동측에 커뮤니티 광장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서측에 휴게공간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동측에 커뮤니티 광장, 맘스레이션 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0동	• 지하층에 방재실 ,MDF실, 관리사무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진동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지하에 인접하여 펌프실, 저수조, 맘스레이션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측에 어린이놀이터, 커뮤니티 광장, 맘스레이션 출입계단 및 승강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에 인접하여 썬큰, 외부승강기 및 계단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동측에 커뮤니티 광장, 티하우스,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서측에 어린이 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1동	• 남동측에 어린이놀이터,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서측에 커뮤니티 광장, 맘스레이션 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측에 어린이집, 유아 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서측에 커뮤니티 광장, 티하우스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동측에 주민운동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에 인접하여 썬큰, 외부승강기 및 계단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2동	• 남측에 어린이놀이터,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서측에 어린이집, 유아 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측에 주민운동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에 인접하여 전기실, 발전기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 동측에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 동측에 한일아파트 및 초등학교(갈곶)가 위치하고 있어 의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3동	• 남동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측에 주민운동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측에 휴게공간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 서측에 35m 도로가 있어 빛, 소음, 분진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 북측에 12m 도로가 설치예정이며, 이로인해 빛, 소음, 분진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주변에 방음벽, 저소음 포장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커튼월(일부동)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4동	• 동측에 어린이집, 커뮤니티 광장, 티하우스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에 인접하여 경비실, 스마트 모빌리티, 외부계단실, 단지 부출입구 및 문주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동측에 지하주차장 출입구(램프)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서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지하에 인접하여 펌프실, 저수조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 북측에 12m 도로가 설치예정이며, 이로인해 빛, 소음, 분진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북서측에 주민운동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5동	- 남측에 어린이집, 커뮤니티 광장, 티하우스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에 인접하여 경비실, 스마트 모빌리티, 외부계단실 단지 부출입구 및 문주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측에 지하주차장 출입구(램프)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동측에 유아 놀이터, 주민운동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지하에 인접하여 펌프실, 저수조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북서측에 12m 도로가 설치예정이며, 이로인해 빛, 소음, 분진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6동	- 남서측에 어린이집, 유아 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측에 주민운동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측에 주민휴게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동측에 근린공원, 한일아파트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남동측에 초등학교(갈곳)가 위치하고 있어 의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서측에 지하주차장 출입구(램프)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7동	- 단지와 동측에 근린공원, 한일아파트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남동측에 초등학교(갈곳)가 위치하고 있어 의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측에 지하주차장 출입구(램프)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서측에 경비실, 스마트 모빌리티, 단지 부출입구 및 문주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동측에 주민휴게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조망, 분진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서측에 12m 도로가 설치예정이며, 이로인해 빛, 소음, 분진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북측에 주차장, 단독주택용지가 설치예정이며, 이로인해 빛, 소음, 분진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유의 사항

- 배선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현관디딤판, 화장대 상판, 욕실 전대 등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재료 고유의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설치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전후면 발코니 창호의 형태, 재질, 크기 및 콘크리트 난간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에 의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기 바람.
- 일부 세대의 경우 현관 전면에 승강기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계약 전에 도면 및 홍보자료 등을 확인하기 바라며, 현관 전면에 계단실은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음.
- 단위세대 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은 안전성에 따라 본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창호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천장에는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 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강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함.
- 현관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필로티층에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세대는 바닥난방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생활환경 (관상용식물, 사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모든 세대의 발코니1 일부(실외기실 내)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로 대피공간을 대신하며, 이는 피난의 용도로 구성된 공간이므로 물건의 적치 등을 할 수 없고,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로 상하부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하향식 피난구 적용 시, 1층 세대 및 필로티 상부 세대는 설치 제외)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음. 또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확장세대와 비확장 세대가 좌. 우. 상. 하에 인접하는 등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인접한 세대의 발코니 미확장으로 인한 단열재 시공으로 벽체가 일부 돌출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부위는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함.
- 세대 내 샤워 부스는 안전유리(접합유리)로 시공됨.
- 현관방화문은 도어클로저 외에 별도의 시설물 (말발굽 등)이 설치되지 않음.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에 거치식 손 끼임 방지장치가 설치됨.
- 세대 내, 세탁기가 설치되는 곳 상부에는 각종 설비배관 노출배관(천정,벽)로 인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의 사양(유리, 창틀) 및 규격,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가전제품, 부동산중개 등)는 본 사업과 무관하므로 특히 계약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람.

12

기타 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알릴 예정이며,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에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임.
-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전자 서면 등을 통하여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7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자는 기반시설의 준공(기반시설 준공 이후 대지권 등기 가능) 이후 입주가 가능하고, 기반시설조성공사 등 각종 여건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3.08.04.) 당시 국공유지(3,713㎡) 소유권 확보 예정 사항은 2023년 9월 21일자로 소유권 확보하였음.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내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적용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4개소, 작은도서관, (실내)주민운동/공동시설(피트니스 센터, 골프연습장 등), (옥외)주민운동시설 5개소, 옥외 휴게공간, 지하주차장, 경비실 2개소 등

■ 기타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이 공급될 예정임.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함.

구분	등급
내진능력	VII(0.204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I~VII)으로 표기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감리회사	감리금액	비 고
----	------	------	-----

건축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4,095,356,100	
전기	상지이앤씨(주)	₩971,871,251	
소방 / 정보통신	(주)신화에프이씨	₩1,435,28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표기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항 목	적용 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가. 의무사항 이행여부 검토		
① 고기밀 창호	적용	거실의 외기직접면한 창호의 기밀성능은 KS F2292 1등급이상
② 고효율기자재	적용	급수펌프(부스타펌프), 고효율 변압기 전동기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③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세대내 거실, 침실, 주방 각1개소)설치
④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단위세대 현관에 설치 (1EA)
⑤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단위세대, 공용부, 부속동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조명기구로 정의되는 제품을 세대 및 공용부위 내 사용
⑥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화장실에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⑦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단위세대 내 각 실 온도조절장치 설치
⑧ 절수설비	적용	수도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세탁용 및 청소용 제외)

■ 「주택법」39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호에 의거 공동주택 성능등급의 표시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림(그린3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한 국 부 동 산 원 장

1. 후원회위원장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통동
2. 신청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통동
3. 대의위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통동 239-3번지
4. 성명 : 홍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한국부동산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전국총회 개요		인원개요	
전국총회	1. 목적 : 삼일교회 설립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	인원명수	23-04-1-0021
총회연차	2020/1231	참가자	김관현
주 소	경기 용마역 전동관 239-21호 1층	인원구분	한국교회원로(4)기초회원
참 수	지영28 / 지영28	운영자	한국세나리안
연락처	2281(02.4768*)	유류기간	시행중인 또는 시행금지 항목일
전국총회 주관 협회	공공주택		
설계자	(주)건축사사무소영광학연구소		
		인원등급	
		인원등급	1등급

1. 인증번호 : 2022-023
2. 신청자(사업주체) : 열지로 지역 주택조합
3. 건축물명 : 평택 길곶지구 열지로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4. 대지위치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길곶리 239-3번지 일원
5. 인증등급 : 일반(★)

성능범주	점 수	등 급
내구성	20점	☆☆★★
가변성	12점	☆☆★★
수리 용이성	9점	☆☆★★
친환경부분	9점	☆☆★★
공공부분	9점	☆☆★★
종합점수 (1 + 2 + 3)	총 100점 중 50점	☐ 최우수 ☐ 우수 ☐ 양호 ☒ 일반

2022년 09월 15일



2023년 03월 20일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장

2023년 03월 20일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01292024-101-0004000	₩ 20,410,6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구 분	주택 또는 단지내 상가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자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여입주금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용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자금관리자
상 호	엘지로 지역주택조합	(주)서희건설	(주)서희건설	우리자산신탁(주)
주 소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2산단로 15-50, 208호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210, 3층 304호(망월동, 메디피아타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210, 3층 304호(망월동, 메디피아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삼성빌딩)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604-82-61519	110111-0335912 (220-81-19330)	110111-0335912 (220-81-19330)	110111-2003236 (107-81-85459)
전화번호	031-377-4748	02-3416-6700	02-3416-6700	02-6202-3000

※ (주)서희건설은 시공사이며, 주택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엘지로 지역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 표기되었음.

■ 건본주택 및 현장 위치 안내

건본주택 및 현장 위치도

- 건본주택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315-49번지
- 현장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239-60번지 일원
- 분양문의 : ☎ 1800-6366
- 홈페이지 : <http://starhills-jinwi.co.kr>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건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